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안 번호	396
----------	-----

제출연월일 : 2008. 10. 27.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재 육성사업이 체계적·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법인격과 사무소를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사업과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재정지원 및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임원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사업계획, 결산,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및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2009년 예산편성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과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8. 10. 2. ~ 10. 21. / 의견없음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이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재단 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안에 둔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2.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3.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각 분야의 국내(전국단위) 또는 국제 대회 등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자로서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
2.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3. 대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학장(원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 자

②그 밖에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기준 등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전광역시·자치구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영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 제출)** 재단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민 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년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정관의 준칙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임원등)** ①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⑤ 이사회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부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⑦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⑧ 감사는 이사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상근 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6조 (이사회)** ①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예산 및 결산등)** ①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②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개시전에 익년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공익법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요강, 회계규칙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감사 등)** ① 주무관청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기타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 기부금품의 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시·도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③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3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①법 제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목적은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교육인적자원부소관)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1호, 2호 생략 ”

3.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공익 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과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시·도지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도·감독

가. 산학협동재단,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지도자 육성 장학재단,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동북아역사재단